

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7-심사-235

제 목 최초 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

㉠도 ㉡시 ㉢구 ㉣로

대표이사 A

대리인 ◇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B, C, D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수급인 이고 E(이하 “재해자”라 한다)는 청구인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청구인은 △에 2016. 7.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였는데 2016. 7. 20. 23시 20분경 재해자는 위 요청에 따른 도로포장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타이어 롤러를 운전하여 트레일러에서 하차하던 중 위 장비

와 함께 추락하여 우측 다리가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해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병을 진단받아 처분청에 요양급여(구분:최초 요양)를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6. 11. 29.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재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과 타이어 롤러 등 도로포장장비의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였으므로 △은 청구인의 하수급인이 아니고, 타이어 롤러 운반은 위 도로포장장비 임대차계약과 관련이 없는 △의 업무이며, 재해자는 롤러운전기능사 면허가 없는데도 무면허

허로 도로포장장비를 하차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청구인은 보험가입자가 아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재해자는 2016. 4. 1. △에 채용된 이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도로포장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6. 11. 4. 청구인 소속 현장소장 F와 △ 대표이사 G가 확인하여 날인 및 서명한 “장비구두계약 확인서”에는 “청구인 소속 F 현장소장은 장비임대업체 △ 대표이사 G에게 포장장비세트를 일대 400만 원에 임대해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 간 하도급계약은 계약조건을 첨부한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타이어 롤러의 하차를 담당하는 자의 조건을 롤러운전기능사 면허를 갖춘 자로 특별히 요

구하였거나 지정하였다는 근거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4) 2016. 11. 15.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도로포장공사는 대부분 포장장비세트라는 항목으로 계약되며, 위 항목의 계약금액에는 통상적으로 도로포장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기계 임대료 및 운전수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5) △이 청구인 소속 현장소장 F에게 발행(날짜 미상)한 청구서에는 7월 21일 포장장비세트 280만 원, 운반비 120만 원, 유제 58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2016. 9. 26.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하루작업 임대료가 280만 원인데 그 중 포장인력비는 80만 원을 차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2016. 11. 2. 처분청이 작성한 △의 사업실태확인서에는 “2016년 도로포장 공사 및 기계순수임대의 비율”에 대한 답변으로 “순수 기계임대는 거의 없음. 주종 목인 도로포장공사업으로 실행하는 편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한 판례¹⁾에 따르면 ① 사업주가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묵인했고, ② 업무에 필요한 수반 행위였으며, ③ 발생한 재해가 해당 업무에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무면

1) 서울행정법원 2005. 8. 23. 선고 2004구단 10381 판결

허 운전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총공사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와 그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라고 정의되어 있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이 청구인에게 포장장비를 임대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하수급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인정사실“(2)~(7)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과 포장장비세트를 임대차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포장장비세트라는 계약항목에는 도로포장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기계장비, 운전수, 일용직 근로자의 임대료와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에 도로포장공

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 된 타이어 롤러 운반이 △과 계약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의 업무라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2)~(5)항”의 내용과 같이 △이 발행한 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이 구두로 계약한 금액인 400만 원에는 포장장비세트 280만 원 외에도 운반비 12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포장장비의 운반은 도로포장공사의 필수적 준비과정에 해당하는 점, ③ 청구인은 재해자가 타이어 롤러를 무면허로 하차한 것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3)항” 및 “(8)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에 타이어 롤러의 하차를 담당하는 자의 조건을 롤러운전기능사 면허를 갖춘 자로 특별히 요구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채 △에 일임하였고, △에서는 재해자가 도로포장장비를 하차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이며, 타이어 롤러의 하차는 하도급 계약 내용인 도로포장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고, 타이어 롤러의 운반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도로포장공사를 수행할 때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 당시 재해자가 행한 도로포장장비 운반업무는 도로포장공사의 필수적 준비 업무로서 총공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의 보험가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 01 . 12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던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이하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사업주로 본다.

②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

(이하 생략)

○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④ (생략)